
제 3 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Ⅲ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

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기관별 재원 구성과 지급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비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 ① 비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② 영리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표 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영 제19조제4항 외 과제	영 제19조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영 별표1)와 같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자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① 비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제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다.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유형 현황'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①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일괄지급(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은 건별지급)하고,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은 일괄지급)함

※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과제는 건별지급 가능함

② 통합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함

〈표 3-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통합Ezbaro	일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 건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 공기업이 아닌 경우 : 건별지급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통합RCMS			건별지급	

- 연구개발비 납부 및 지급 대행(사용기준 제2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관리전담기관으로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통합Ezbaro 운영)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 운영)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비 이관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직접비 : 직접비 잔액

- 간접비

① 비영리기관 : 직접비 사용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② 영리기관 : 간접비 잔액

〈표 3-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직접비	직접비 잔액	직접비 잔액
간접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금액을 말함	간접비 잔액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담 단위	• 연구개발과제별 부담	• 연구개발기관별 부담
중견기업	• 60% 이내 정부지원	• 70% 이내 정부지원
공기업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50% 이내 정부지원
특례 설정	• 과기정통부 사전협의 필요	• 긴급한 경우 사후통보 허용
현물부담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에 한정 • 세목별 최대 비율을 한정	• (좌동) • 항목별 최대 비율 삭제

바.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대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Q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통보하여야 함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6.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Q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이관받는 기관은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변경 승인일자 또는 양도양수 시 정함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이관하는 기관 인정 간접비(A)
= 직접비 사용금액 × 간접비 고시비율
- 이관받는 기관 인정 간접비(B)
= (협약시점 직접비 - A기관 직접비 사용금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직접비로 전용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접비 증액 승인 불필요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협약시점의 간접비로 인정.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 (이관하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낮을 경우) 이관시점에 이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간접비비율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직접비로 전용
- (이관받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을 경우)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잔액을 이관하는 것이 원칙.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Q8. 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을 연구개발기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별표1]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가. 규정취지

- 연구개발비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 포함/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단,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의 본원과 분원간의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있음
 -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현금·현물 계상기준
 -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

- ①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현물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사용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 ②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 ③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5〉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사용기준 [별표1]을 따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7]을 따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8]을 따름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영 [별표3]을 따르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구매 및 검수의무 미존재(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바. Q&A

Q1.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舊 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함
 -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에 명시하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걸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Q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인건비계상률 시스템 입력기한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 까지 입력

- 인건비 구성항목

- ①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 ②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표 3-6〉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표 3-7〉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인건비 계상한도

〈표 3-8〉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제외)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매년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표 3-9〉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130%	0%	130%
지급	100%	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 계상률(0%)을 초과하여 불가)		

〈표 3-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60%	70%	130%
지급	60%	4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 계상률(70%) 미만으로 가능)		

-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1〉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⑥ (검직의 경우) 검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검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없음(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 • 그 외 기관 : 월급여 총액 단위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구분	종전	혁신법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 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참여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 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0% 입력불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입력됨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지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고가 국가 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고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기준 별지2호 서식) 관리 필요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마. Q&A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Q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Q4.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8조·제5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Q6.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에는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Q7.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Q8.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9.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없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음
- 동 규정은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Q10.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Q11.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12.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달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종전(참여율)	현행(총인건비계상률)
$\frac{60}{120} = 50\%$	$\frac{40}{100} = 40\%$
	*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0만원은 총인건비계상률과 별도로 인건비에서 계상

Q13.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 연봉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사용기준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 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
 - ※ 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되, 비통합관리기관은 지급액·계상률 기재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칸을 삭제하여 활용, 서명란은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기관장' 제3자로 수정하여 서명(본절 바. 참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없는 기관(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수료자의 등록에 준하는 사항을 대학의 학칙이나 학적시스템, 자체 학적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의 소속임이 증명 가능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2〉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 필요,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신 설>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연구참여 협약 체결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마. Q&A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전일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추가 확보 노력,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 제한 등)

Q2.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Q3.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시한은?

-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 ※ 지급률과 연구참여기간은 별개임. 일할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Q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Q5.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6.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Q7.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
 -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8.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은?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에서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고시 제39조제10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대학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예정인 금액을 통보해야 함. 원 소속대학과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예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25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인건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150만 원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1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함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고시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 원 소속 대학에서도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관련)

※ 연구개발기관장(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대체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 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20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 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20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나.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 자산등록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①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 ②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간접비 사용용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3〉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자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장비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기준 제23조제5항〉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4〉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재료비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①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②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③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②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③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 ②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과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 ①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 ②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④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⑥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①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표 3-15〉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②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①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 ②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 ③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6〉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출장비	국내	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국외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증명자료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부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창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연구실 운영 위한 소모성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상)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상) 정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영리기관 계상불가)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자체규정 마련필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마. Q&A

Q1.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연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Q6.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Q7.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Q9.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함)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 ①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②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right)$$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기관 유형별 연구수당 사용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표 3-17〉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당집행 회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삭제〉
정부출연연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 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

마. Q&A

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Q2.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4.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Q7.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8.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100%이므로, 지급이 불가함. 단,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함

제9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8〉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집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3항>
정산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제10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부담비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신설〉	• 정부출연기관(기본사업만 해당)만 계상가능
연구개발부담비	• 〈신설〉	• 정부출연기관(영 제19조제4항 각호)만 계상가능 • 기본사업 중 연구과제협약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①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②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③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⑤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⑥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함
 - 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text{(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text{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div \text{수정직접비}$$

- ②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법
- ③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0〉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 체결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 시점
간접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처리규정 제25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5%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영리기관) 불가

마. Q&A

Q1. 논문게재료는 직접비와 간접비 중 어느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함

Q2.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종단'의 범위는?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말함

Q3.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Q5.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Q6.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제12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시작일을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앞당기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의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보는 근거 마련

나. 사용절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의 발의를 거쳐야 함
 -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 ② 연구재료비
 - ③ 연구활동비
 - ④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그 밖에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까지 입력할 수 있음
 - ②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

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의 사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②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하려는 경우
 - ③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 ④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 ⑤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⑥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⑦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전 승인 절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 (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시행령 제24조제4항>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사용기준 제71조제1항>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사용기준 제71조제2항>
증명자료 보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터 또는 최종연구 종료일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사용기준 제70조제2항>
자체회계 감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삭제>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신설>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신설>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좌동>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 이월)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구분	종전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전승인 통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통보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전문기관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의 20% 증액 •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시행령 제43조제3항〉

아. Q&A

Q1.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 이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일괄지급 :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 사용일 이전
-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Q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을 말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Q3. 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변경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전 승인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Q4.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부처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이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 업무에 대하여 부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면 부처의 사전 승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처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Q5.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제13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지원금이자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수당에 산입가능)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다.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 포함)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 하면서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라.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 구분은?

-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각 연구개발비(정부지원, 민간부담 등)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비례배분하여 결정

Q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는?

-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제14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단,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등록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당연도 종료일 이후 수정·보완은 가능함

정산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자료에 더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의 출력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 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 단계(단계 구분이 없으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 직접비 사용비율(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은 고려하지 아니 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통합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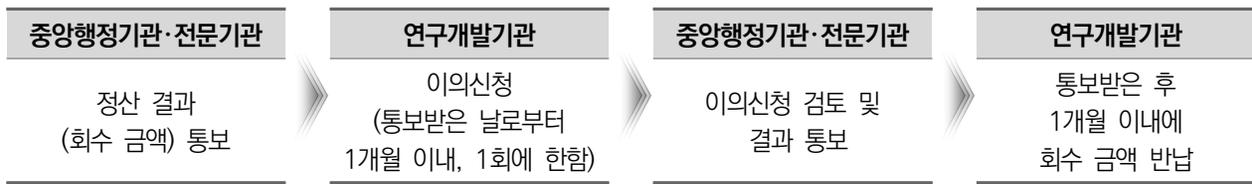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
-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마. 정산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산 이의신청(사용기준 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음

〈표 3-21〉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 유예 및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 별도없음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정산주기	•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 부담확인서 • <신설>	• <좌동>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정산시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회수금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삭제〉
정산 이의신청 최대가능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회에 한함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회수금액 반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안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가능
회수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면제
회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정산이의 신청서 서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서식 마련 (사용기준 별지 제6호서식)
정부지분률,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연구기간 단위

아. 경과조치 사례

- '20년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사례1 :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3-22〉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1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12.31.)	'21년 (1.1.~12.31.)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정산기준					
회수기준					

-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와 같이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적용함
 - 정산 기준과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사용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사용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3-23〉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2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년 (20.7.1.~21.6.30.)		'22년
				'20.7.1. ~'20.12.31.	'21.1.1. ~'21.6.30.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정산기준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회수기준						

자. Q&A

Q1.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

-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 전에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내부결제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Q2.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20.12.31. 이전이나,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은 '21.1.1. 이후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이체 등 실제 지급일이 '21.1.1. 이후인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20.12.31.까지 완료되었다면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규정을 적용함

Q3.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①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②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③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Q5.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Q6.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이 원칙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단서는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Q7.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제15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이하 “산출기준”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사용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 ②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사용기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사용기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사용기준 별표 6과 같음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 및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각각 5퍼센트로 함
-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및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함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 포함)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함

-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으로 지정 하고,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라. Q&A

Q1.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Q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협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가R&D과제 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협약서 상 대가를 제공하는 과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안내할 때는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대가성(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회계적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도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음
- 정리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제16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전/후 비교

- (이전) 부처별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달리 규정
- (변경)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관리
 - * 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제외

다. 주요내용

- (기능) 과제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내역을 연계받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내역 관련 정보·증명자료를 입력·업로드
- (상시점검) 부처(전문기관) 소관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상시점검 가능

라. 개요

-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정산 업무를 지원
- '19.9월, 과기정통부(Ezbaro)와 산업부(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서비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항목 표준화·간소화(12개부처 526개 정보 → 330개 공통정보), 종이영수증 부담 감소, 하나의 연구비카드

〈표 3-24〉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마.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 부처별 연구비 집행항목 및 절차 상이 • 연구비 서비스 절차 상이 • 사용 용도별 연구비 입력항목 상이 • 관련 규정 상이 • 연구비 집행 안내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 • 연구개발비 항목과 절차 표준화 • 연구개발비 서비스 표준화 •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 입력항목 표준화 및 대폭 간소화 • 관련 규정 표준화 • 통합 홈페이지(GAIA)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부처·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부재 • 연구비 정보 공유 제한 • 부처별 연구비 집행정보 각각 관리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예방 기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연구개발비 통계 제공 • 공유 정보·채널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정보 통합관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운영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현장 행정업무 부담 및 각 전문기관별 연간 유지보수 비용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현장 행정업무처리 시간 단축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유지 보수비 절감

제17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가. 규정의 취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사용기준 제116조)

나. 사용용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름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 시행령 별표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름

다. 사용기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사용기준 별표7)

- 공통기준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하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기존에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는 인건비로 재분류되는 것이므로 항목 간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연구 수행 중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므로 21.1.1. 이후 신규 과제에서도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자교 학생연구자를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 연구자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로의 전용도 20% 전용 제한에서 제외)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에서 인건비에는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

- ① 참여연구자가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 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임용된 경우
- ② 참여연구자가 「학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참여연구자 역할	사용방법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사용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학생인건비 사용 특례(사용기준 제86조~제99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사용기준 제100조~111조)를 적용하지 않음

- *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사용 특례(사용기준 제86조~제99조) 적용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름

- 인건비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동안 실지금액으로 계상)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함)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불가

- * 다른 재원의 적용범위는 학술진흥법 적용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말함(예시. 참여연구자가 하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다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인건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다음의 금액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 학사과정(월 100만원), 석사과정(월 180만원), 박사과정(월 250만원)

-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 * 학생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사용기준 별표7)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계상가능

- * 학생연구자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이외에 별도로 총인건비계상률 범위에서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사용기준 제40조 제4항)

- *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또한, 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계상 가능. 다만, 인건비는 다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계상 불가능)

- 학생연구자가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불가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1개월 전 자체규정에 따라 도입(검수)되어야 함

- * 기기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1호 및 별표1의1 내용 준용함

-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1개월 전 도입(검수)되어야 함

-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연구활동비에 계상

- 연구수당

- 참여연구자 1인당 월 40만원 이내 계상.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사전에 알려야 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가 전임교원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사용할 수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학술단체지원사업(사용기준 별표8)

- 공통기준

- 사용기준 별표8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기준 별표7을 따름

- 연구활동비

- 학술대회지원사업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타 경비를 계상 가능
 -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학술지지원사업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윤리활동비*, 기타 경비*를 계상 가능
 - * 연구윤리활동비 및 기타경비 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는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하여 계상 가능
 -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학술진흥법 제7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을 따름
 - ※ 직접비(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간접비로 구분

- 사용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지원하는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 혁신법 적용 주요사항(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중심)

구분	학술지원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산학연협력사업 (산학협력법 제38조제1항)
법	제9조~제12조, 제14조~제15조 적용제외가능(다른 법률에 정할 경우)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적용 : 제19조(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제20조(사용용도 등), 제24조(연구개발비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제42조(자료 등의 제공요청), 제32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 		
별표1 (부담기준)	적용	적용	적용
별표2 (사용용도)	적용	미적용	적용
별표3 (사용용도특례)	미적용	적용	미적용
시행규칙 (서식중심)	별지제7호 적용(사용실적보고서)		
사용기준	제18조~제72조는 별표7,8따름	제18조~제72조는 중앙행정기관 별도정함	모두적용
별표7,8 (계상 및 인정특례)	적용 (별표7,8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1~115조 따름)	미적용	미적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사용	• 별도 시스템사용 의무 없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연구기간 외 사용	•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연구비카드사용	• 별도 없음	•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가능)
현금사용 가능한다	•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처리규정 제24조제2항〉	• 한도 삭제
항목 전용제한 (인건비)	•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처리규정 제24조제5항〉	• 직접비 총액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사용기준 별표7〉
항목 전용제한 (간접비)	•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 증액 가능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사항)

•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계상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 여부 불명확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 가능

• 학생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급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가능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불가 (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연구시설 장비 구입	•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계상가능	•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비의 대상 및 ZEUS시스템 등록 (과기분야와 동일 적용)

• 연구재료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특이사항 없음

•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사용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야근(특근) 식대	• 규정이 없음	• 집행가능
연구환경 유지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시 집행불가	• 계상가능(도입기한 제한 없음)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과기분야와 동일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및 협업연구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은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일 경우, 연구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국외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있음

•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지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지급대상자임 (학생연구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연구자도 지급가능(단,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별도의 계상기준을 정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사전에 알려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특이사항 없음

• 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5%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간접비 회수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 승인사항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신설〉 〈신설〉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연구소지원사업 위주) 〈신설〉 〈신설〉 〈신설〉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기준 제73조〉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기준 별표7〉
사전승인 통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통보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내 통보(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 기관에 사전 통보)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43조제3항〉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제 산입사용, 연구개발재투자, 성과활용, 국고반납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이상 시 전문기관 승인 	〈삭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정산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였으나, 별도 양식 및 세부집행내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정산(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 세부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시스템에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키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사용금액 정의 불명확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 현재 별도 사용기준 제정 중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021.2.1.제정)

마. Q&A

Q1.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도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을 변경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①연구개발비 항목, ②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 ③사용기준, 제재처분 규정 등이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되어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①연구개발비 항목은 사실상 동일하고,
 - ②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약서 상의 금액과 실제 사용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무관하므로 협약을 변경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 ※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협약서 상의 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와 실제 사용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 금액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해야 함
 - 또한, ③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재처분 규정 등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법령이 개정되면 협약에 우선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을 반드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법령과 협약서에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기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불가피한 변경이 발생할 때, 함께 변경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Q2. 학술지원사업은 최종보고서 대신 원고를 작성·제출해 왔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종전과 같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원고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인건비와 인건비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Q4.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 가능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존에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계상되었던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인건비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비목 간 전용이 아닙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이를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Q5.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학생연구자에게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만 학생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6. 학생연구자가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7.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타 대학이 수행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인건비 기준 제2호의 급여에 학생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학위과정 졸업자에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9.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존에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계상되었던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인건비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비목 간 전용이 아닙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이를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Q10.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하기 전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교1에 따라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자는 학생연구자가 되며, 이들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1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연구수당 지급 시, 동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연구수당 부분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수당에 관한 기준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예를 들어, 참여연구자가 추가될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전용하기 위해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Q12.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사용이 가능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논문게재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간접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한편, 논문게재료 관련하여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모두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직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13.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력만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회의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이 1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에서만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력에 대한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Q14.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하로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을 정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로만 적용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자율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하로 간접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Q15.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특정금액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정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특정금액으로 간접비를 정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자율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특정금액으로 간접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16.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노트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가 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술진흥법」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원고 등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과기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주요 차이점

〈표 3-25〉 과학기술(이공) 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비 기준 차이점

구분	과학기술(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항목 전용제한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있음 인건비↔직접비(인건비 제외 항목)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가능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불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불가 단, 특정(연) 및 정부출연(연)은 적용가능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특례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불가
인건비 지급단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인건비 계상	• 최대 총인건비계상을 범위 내에서 여러 연구개발과제 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 하나의 학술지원사업에서 모든 인건비를 계상해야함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 석사과정 : 월 18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이상 • 통합과정 : 상기 지급기준 고려 별도정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 :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 장비 도입기한	• (원칙) 전체(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 (원칙)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수당 계상기준	•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 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 기여도 평가 후 지급	• (원칙)참여연구자 1인당 월 40만원 이내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특성 고려하여 계상기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여도 평가없이 정액지급 가능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도 연구수당 지급 가능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연구수당 지급불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중복 수혜 불가)
연구수당 회수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 인건비의 20% 초과금액 회수	미적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 초과한 경우 회수	미적용

제18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및 제86조부터 제99조(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통합)

가. 규정의 취지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총 61개 기관 지정·운영(59개 대학·특정연, 2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780호('20.12.29.))

나.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을 계속 사용

-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 금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도 지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차등지급
 -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매월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선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정부출연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2 충족 필요) 후 신규 지정 신청
 - 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요건 충족 시 지정통보
 - ※ '19.9월 이후부터는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 ※ 자세한 사항은 별권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좌 동〉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정보공개	〈신 설〉	학생인건비 지급, 부당회수 현황 공개
연구참여 협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 양자 협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통합관리기관장 3자 협약
소속변경 시 잔액이관	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금액 산출	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 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
과제중단 시 잔액사용	〈신 설〉	기관 내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고시 별지 제8조서식(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라. Q&A

Q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던 과제가 종료된 경우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까지 지급 가능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Q2.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만약,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의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한 뒤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타 연구책임자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Q3.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학생연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연구자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9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가. 규정의 취지

-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사항 명시

나. 주요내용

-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내 장비운영비를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그림 3-1]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 근거법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제정)’으로 통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으로 규정이 통합되면서 제도 일부 사항 개정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제102조)
 - 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뿐만 아니라 비R&D재원 장비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통합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제105조)
 - 통합관리비는 최초 설정이후 변경이 불가하나, 다년도 과제인 경우 해당 연도 과제비 지급전까지 통합관리비의 변경을 허용(제103조) 등

다. 혁신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비 사용 특례 근거 (연구시설 장비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8항 4호 및 제12조의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4항 4호 시행령 제20조 4항 2호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세부내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세부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 (과기정통부 고시)

라. Q&A

Q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비 적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수정직접비의 10%이내에서 통합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비가 확정됨(기본사업의 경우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확정된 통합관리비를 적립하면 됨

Q2.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이 가능한 비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 비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경우, ZEUS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현물로 계상되거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장비에 한하여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이 가능함

Q3. 연구기관 및 각 단위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초과분을 처리하게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3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는 유형별 적립한도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10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7억 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 원)를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적립하고자 하는 계정의 적립한도를 먼저 확인한 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필요 및 용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내 여러 계정에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음
- 만약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려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적립한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적절한 타 유형 계정(소속된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